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2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헌승·조경태·임이자

박덕흠 · 성일종 · 김 건

송석준 · 서범수 · 박성훈

강명구 • 곽규택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 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 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8(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 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 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 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제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7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활용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훈등 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6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① 각 호·	
이하 후 선 를 국가 국가유 무원으는 모약이 아 가보훈 1. 제6 국가 2. 「글 원에 41호 말한 가유 무원.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 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

 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 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 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경된 경우
-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 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 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7조의

<신 설>

제85조(벌칙)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 다.

제7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5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

<신 설>

을 사용하거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7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
 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
 지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
 가보훈등록증을 활용한 사람